

세무대리 수임등록 개요

□ 세무대리 수임등록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를 등록하고 납세자(세무대리 의뢰인)가 이를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

□ 수임등록 절차

- **(세무대리인)** 홈택스의 수입납세자 등록화면에서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수입납세자 등록·신청
 -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납세자-세무대리 의뢰인)**
 - ①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 화면에서 위임내용에 동의*하거나
 -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휴대폰·신용카드 인증 필요
 - ** 납세자(세무대리 의뢰인)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에서 자신이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해임가능
 - ② 세무서를 내방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 수임등록 종류

- **(세무대리)** 세무대리 의뢰인의 고지·체납 등 수입납세자 정보 조회 업무 및 증명발급, 휴폐업신고, 전자고지 신청 등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서비스 이용가능
- **(신고대리/외부조정)**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회 등 신고대리 서비스 및 신고도움서비스 이용가능
 - * 신고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일반정보 조회만 가능, 증명발급과 각종 신청업무는 처리 불가

세무대리 수임등록 업무별 절차

①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 세무대리인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첫 화면에서 기장대리/신고대리(외부조정) 구분에 따라 '등록'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 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Home Tax logo and various menu items: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and '세무대리인'. The '세무대리인'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and a '전체메뉴'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세무대리인' and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service. There are three main sections: '기장대리', '세무대리인 공동', and '신고대리'. Each section has a '등록' button highlighted in red. The '기장대리' section lists various services like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고지내역 조회', etc. The '세무대리인 공동' section lists services like '부가가치세 예경고지 세액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etc. The '신고대리' section lists '중여세결정내역'.

② 세무대리 의뢰인의 등록사항 입력

- ①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요청한 정보제공 범위(타소득 포함, 해당사업장)를 정확히 입력

- ② 개인사업자는 타소득포함과 해당사업장 중 선택

-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타소득포함은 한번만 선택되므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 “수임납세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로 검색 > 상세보기” 버튼 클릭하여 타사업장에 이미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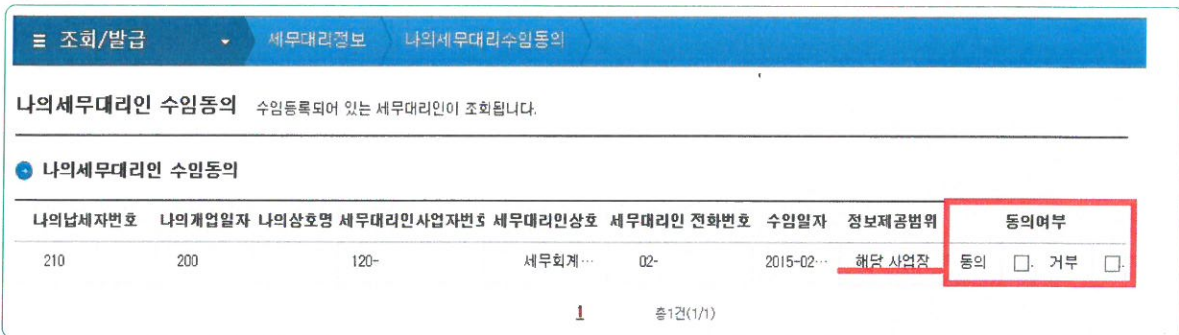
* 다른 세무대리인이 '타소득포함'으로 수임한 경우 이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서로 문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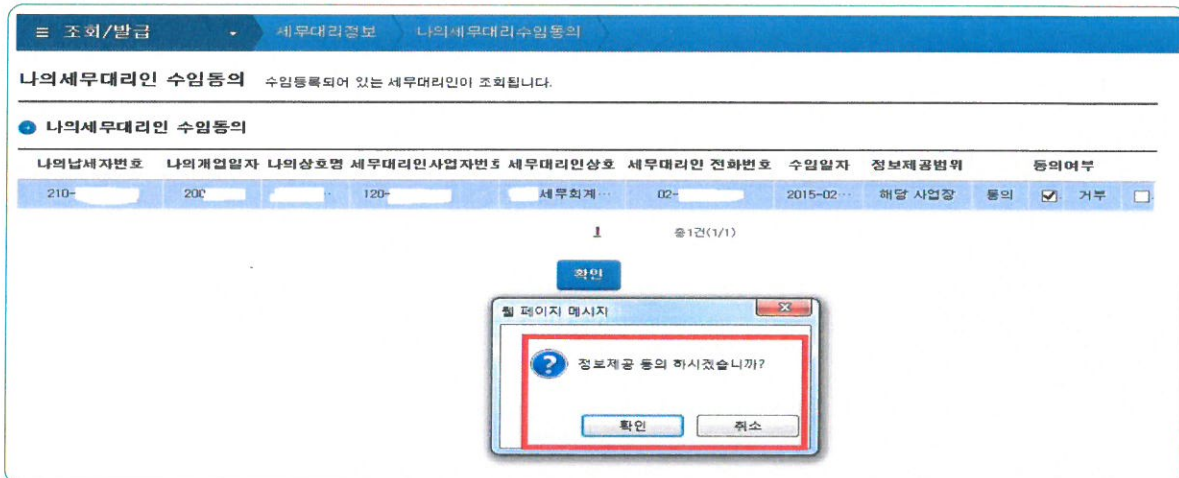
③ 세무대리 의뢰인(납세자)의 동의

①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면 나오는 세무대리정보 메뉴에서 위임구분에 따라 '수임동의' 클릭

② 세무대리정보 중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선택하고 정보 제공 범위 및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선택



③ 선택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팝업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며,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수임동의가 처리됨(취소는 거부)



④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동의 방법

- (세무서 방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세무대리 정보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

- ①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 등
 - ②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4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 이용권한 확대

- (조회권한 확대)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화면 개설
 - * 납세자가 수입동의화면에서 동의해야 조회 가능
 - * (세무대리인) 외부조정납세자 등록 →(납세자) 외부조정 수입동의